posco
포스코퓨처엠

산림파괴방지 정책
(No Deforestation Policy)

최종 수정일	'25. 12. 01.	최초 제정일	'23. 04. 28
Rev.	2	표준번호	-
담당부서	지속가능경영그룹		
검토자	지속가능경영그룹장		
승인자	대표이사 사장		

목적

본 정책은 포스코퓨처엠이 경영활동 전반에 걸쳐 발생가능한 산림파괴를 예방하고, 지역사회의 산림을 보호하기 위한 원칙과 실행방안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산림파괴 방지 정책은 UN 지구산림목표를 위한 전략계획(UN, Strategic Plan for Forests and GFGs), UN당사국총회 산림 이니셔티브(UN, Reducing Emission from Deforestation and Forest Degradation Plus Conservation), 국제자연보전연맹의 보호지역 카테고리 적용 가이드라인(IUCN, Guidelines for Applying Protected Area Management Categories) 등을 참고하여 제정하였다

적용범위

본 정책은 포스코퓨처엠 전 사업장 및 출자법인에 적용된다. 포스코퓨처엠과 거래하는 협력사 및 계약사도 본 정책 또는 본 정책과 유사한 수준의 정책을 준수할 것을 권장한다. 또한, 임직원은 협력사, 계약사, 공급업체, 서비스업체 등 비즈니스 전 과정의 파트너사를 대할 때에도 본 정책을 준수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다만, 산림파괴 금지, 산림지역 보호, 벌채 및 목재제품의 이용 등에 관한 현지 법률 및 규제가 있는 경우 이를 우선적으로 준수한다.

기본원칙

1. 자원을 채취하여 제품을 생산하고 소비한 후에는 이를 폐기하는 선형경제(Linear Economy)를 벗어나, 자원 절약과 재활용을 통해 지속가능성을 추구하는 순환경제(Circular Economy) 기반의 비즈니스 모델로 전환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2. 사업의 모든 단계에서 초래될 수 있는 산림 파괴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여, 이를 방지 또는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산림이 훼손된 경우, 이를 복구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3. 산림 파괴가 불가피한 경우 다른 장소에 대체 산림 등을 조성하는 등 산림의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며, 산림의 가치가 높은 지역에서 사업을 운영하지 않는다.

4. 경영활동으로 인해 산림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대상 지역을 설정하고, 사업장 내외부에 지정된 보호지역과 그 외 산림 가치가 높은 지역을 모니터링하여 산림에 대한 영향을 평가하고 관리한다.

5. 사업장 소재지 및 협력사 소재지 내에서 발견된 멸종위기 식물의 위협요인을 식별하고, 해당 종(species)의 보존을 위한 전략을 마련한다.

6. 경영활동으로 인해 산림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지역에서 생태계 복원 프로젝트를 시행하고 그 계획 수립 및 이행 과정, 지역사회 참여 노력 및 프로젝트 결과를 공개한다.

7. 식물자원을 이용한 연구개발, 식물종의 증진과 보호를 위한 사업, 산림보호 관련 국제 이니셔티브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실행방안

1. 경영전략 및 의사결정 과정, 장기적인 리스크 분석 과정 등에서 산림파괴 이슈가 지속적으로 고려될 수 있는 절차와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고 중요 이슈는 이사회에 보고한다.

2. 산림 관리를 회사의 환경관리시스템에 통합하고, 이를 통제 및 모니터링하기 위한 목표와 기준을 수립한다.